

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근로자(전시큐레이터)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22일
국립무형유산원장

□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명단

▶ 최종합격자

응시번호 : 03 방○○

▶ 예비합격자

응시번호 : 08 이○○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

가. 제출기한 : 2024. 4. 25(금) 14:00까지

나. 제출장소 :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

다. 제출서류

- 채용신체검사서(일반 채용신체검사서용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* 붙임 별지 제8호 서식 작성) 또는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(*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)
- 결격사유 확인서(붙임 양식)
- 가족관계증명서 1부/ 기본증명서 1부
- 최종학력증명서 1부/ 사진 1매
-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:

라. 채용예정일 : 2024. 5. 13.(월)
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(063-280-145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- 이용기관 명칭 :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
-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공무원근로자(전시큐레이터) 채용
-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주민등록표 등·초본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주민등록 ☒ 여권 ☐ 외국인등록 ☐ 운전면허) 번호 : 000000-0000000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4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결격사유 확인서

○ 성 명:

○ 생년월일:

본인은 문화재청 공무원근로자(전시큐레이터)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4. . .

확인자:

(인)

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